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574호(號) 1928년(昭和 3) 11월 28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8(昭和 3)년 12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11월 2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- 1 내지발착(內地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사(線絲: 코튼사[cotton絲·무명실]를 제[除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사카발(大阪發), 66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면사(線絲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「오사카(大阪)」를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면포(綿布: 무늬가 없는 물[無地物]. 단(但)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사카발(大阪發), 78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면포(綿布: 옷 한 벌의 옷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사카(大阪)」를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인쇄용지(印刷用紙), 포장지(包裝紙), 아트지(art紙), 벽지(壁紙: 무늬가 없는 것[無地物] 및 냄비와 솥[鍋釜: 뚜껑 및 부속품 포함]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※, 66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비누(石鹼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66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청주(淸酒), 미림(味淋),¹⁾ 탁주(濁酒), 백주(白酒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사카발(大阪發), 78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식품류(食品類), 육류(肉類) 및 그 제품(製品: 통조림[罐詰], 병조림[瓶詰]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※, 78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성선(省線), 만철선(滿鐵線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사(綿絲) 및 면포(綿布: 옷 한 벌의 옷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사카」를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면사(綿絲), 면포(綿布: 옷 한 벌의 옷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하거나 또는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62」를 삭제

1) 역자: 찻쌀지에밥에 소주, 누룩을 섞어 빚은 후 그 재강을 짜낸 술.

(削除)함.

- 1 동(同) 면포제품(綿布製品), 서양수건[手拭: 연속한 것 포함], 면시트(綿sheet), 면사제(綿絲製) 편물(編物) 및 세트물[組物], 면제의류(綿製衣類: 직접 몸에 착용하는 것에 한[限]함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78」을 「고베발(神戸發), 78」로 개정(改正)함.
- 1 동(同) 종이[紙: 보드지(board紙)를 제(除)함], 가공지(加工紙: 모지[模紙], 벽지[壁紙], 아트지[art紙], 부전[附箋], 봉투[封筒], 종이제[紙製] 꼬리표[荷札]의 항(項) 소화물급(小貨物扱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62」 및 차급(車扱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6, 79」를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피혁(皮革) 및 피혁제품(皮革製品), 피혁제화(皮革製靴), 가방[鞆], 지갑[錢入: 모피(毛皮) 및 모피제품(毛皮製品)은 제(除)함]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78」을 「고베발(神戸發), 78」로 개정(改正)함.
- 1 동(同) 동(銅), 놋쇠[眞鍮], 동(銅) 및 놋쇠제품[眞鍮製品], 금고(金庫), 인물(刃物: 서양체도(剃刀)을 제(除)함]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78」을 삭제(削除)함.
- 1 동(同) 청주(淸酒), 미림(味淋), 탁주(濁酒), 백주(白酒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, 78」을 「고베발(神戸發), 78」로 개정(改正)함.